

# 優先審査 處理지침 改正

## 特許廳 訓令 第97號로...發令한 날로 施行

- ..... 特許廳은 지난 10月 7日 特許法 第80條의 4에 規定된 優先審査 制度의 원활한 運.....○
- .....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優先審査 申請 處理지침을 補完하여 改正했다. ....○
- ..... 特許廳 訓令 第97號로 發令된 이 지침은 發令日인 지난 10月 7日부터 施行되고 .....○
- .....있다. ....○

### ◎ 特許廳 訓令 第97號 ◎

特許法 施行令 第14條 第2項에 규정된 優先審査의 결정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發令한다.

1985. 10. 7  
特許廳長

### ◎ 優先審査處理지침改正 ◎

#### 1. 優先審査의 對象

가. 防衛産業分野의 出願

國防部長官이 추천하는 防衛産業分野의 出願

나. 에너지의 節約 또는 그 代替産業分野의 出願

動資部長官이 추천하고 國公立研究機關이 인정 (試驗成績書등)하는 에너지 절약및 그 代替産業分野의 出願

다. 輸出促進에 유용한 出願

主動部長官이 추천하는 輸出促進에 유용한 出願으로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가 있고 第3者의 침해事實및 그 증거가 있는 出願

라. 公害防止에 유용한 出願

保社部長官이 추천하고 國公立研究機關이 인정 (試驗成績書등)하는 公害防止에 유용한 出願

마.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그 研究機關의 職務發明으로서 公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出願

主務部長官이 추천하는 公務員의 職務發明으로서 公익상 필요한 경우 (例: 교통, 체신, 보건, 위생, 수도, 가스, 하수등의 公익사업분야)

바. 出願 公開후 出願公告前에 特許出願人이 아닌자가 業으로서 特許出願된 發明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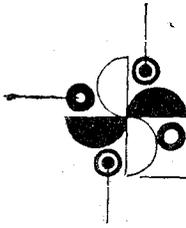
#### 2. 優先審査 選別會議

가. 出願人으로부터 優先審査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優先審査 選別會議의 심의를 거쳐 廳長이 그 優先審査 여부를 결정한다.

나. 優先審査 選別會議는 次長이 委員長이 되고, 委員은 優先審査 申請이 있는 出願이 속하는 해당 심사국장, 심사담당관과 심사2국장, 심판소장 및 해당분야의 항고심판관으로 구성하며 심사조정과장이 간사가 된다..

다. 審査調整課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優先審査 選別會議에 상정치 않고 局長의 결재를 득하여 優先審査 申請人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優先審査 申請을 각하할 수 있다.

1) 優先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申請書類 및 요



건을 구비치 않은 경우.

- (2) 優先審査의 대상 바항의 경우에 出願人과 實施者가 실시의 허락등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경우.
- (3) 當該 出願의 정상적인 審査着手 시기가 1개월 이내로서 優先審査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優先審査 申請時的 구비서류 및 요건

가. 優先審査 申請書를 提出하기 이전에 出願 審査請求가 되어 있어야 됨.

(意匠 및 商標등에 관한 出願은 제외)

나. 優先審査 申請書

다. 구비서류 (優先審査의 대상 가항—마항의 경우)

- 1) 優先審査 申請理由書
- 2) 상기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
- 3) 主務部長官의 추천서

라. 구비서류(優先審査의 대상 바항의 경우)

- 1) 優先審査 申請 理由書(실시상황, 실시등에 의한 영향, 협의경위)
- 2)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경고장 사본 (나) 出願發明을 實施한 것이 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 (다) 실시상황의 근거가 되는 서류 및 물건
  - (라) 제출자가 出願人이 아닌 경우에는 그 出願이 特許要件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 및 그 근거가 되는 간행물등의 기타 서류.

4. 優先審査申請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가. 優先審査 申請書는 審査調整課에서 접수한다.

나. 審査調整課는 優先審査 申請書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 (1개월이내)를 지정하여 보완할 기회를 준다.

다. 審査調整課는 優先審査申請書 및 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審査局에 그 出願의 出願事項 (出願의 種類, 出願人, 出願日,

出願의 要旨, 審査請求日등), 심사착수 예정시기, 主務部長官의 추천, 優先審査 申請理由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라. 審査調整課는 상기 第2項 다호의 우선심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안건을 작성, 優先審査 選別會議에 상정한다.

마. 優先審査 選別會議는 優先審査 申請書 및 그 이유, 主務部長官의 추천서, 해당 審査局의 의견을 참작하여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1) 優先審査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2) 優先審査할만한 효과가 예견되는지의 여부
- 3) 他出願에 우선하여 심사할 시급성이 있는지의 여부

바. 審査調整課는 優先審査 選別會議의 심의 결과를 廳長에게 보고하고 廳長은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사. 우선심사가 필요한 出願에 대하여는 해당 審査局에 優先審査를 명함과 동시에 申請人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優先審査가 불필요한 出願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함께 申請人에게 통지한다.

아. 優先審査의 명령을 받은 擔當審査官은 출원 포대에 “優先審査”의 적색 고무인을 압인한 후 他出願에 우선하여 심사하되 出願日로부터 1년 (商標, 意匠出願의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出願은 심사에 착수할 수 없다.

자. 擔當審査官은 일단 심사에 착수한 후에는 통상의 심사처리 절차에 의한다.

차. 審査調整課는 해당 出願의 審査處理 결과를 廳長에게 보고 한다.

부 칙

이 령은 發令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